

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

- (일부개정) 2006-09-29 조례 제 3144호
- (일부개정) 2007-01-02 조례 제 3168호
- (일부개정) 2007-07-06 조례 제 3189호 (강원도민회관 운영·관리조례)
- (일부개정) 2007-12-21 조례 제 3227호
- (일부개정) 2008-02-29 조례 제 3242호
- (일부개정) 2008-08-08 조례 제 3276호
- (일부개정) 2008-12-29 조례 제 3313호
- (일부개정) 2009-03-13 조례 제 3317호 (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)
- (일부개정) 2009-04-03 조례 제 3322호
- (일부개정) 2009-05-29 조례 제 3333호 (강원도자연학습원 운영조례)
- (일부개정) 2009-06-23 조례 제 3344호
- (일부개정) 2009-08-07 조례 제 3350호 (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)
- (일부개정) 2009-12-31 조례 제 3370호
- (일부개정) 2010-04-02 조례 제 3386호
- (일부개정) 2010-10-29 조례 제 3432호
- (일부개정) 2011-03-11 조례 제 3457호
- (일부개정) 2011-12-23 조례 제 3515호
- (전부개정) 2012-07-13 조례 제 3564호
- (일부개정) 2013-03-15 조례 제 3619호 (강원도 사무위임조례)
- (일부개정) 2013-07-26 조례 제 3657호
- (일부개정) 2013-10-25 조례 제 3675호
- (일부개정) 2014-05-09 조례 제 3745호
- (전부개정) 2015-01-02 조례 제 3797호
- (일부개정) 2015-07-10 조례 제 3855호
- (일부개정) 2015-07-24 조례 제 3867호
- (일부개정) 2015-12-31 조례 제 3957호
- (일부개정) 2016-04-01 조례 제 4003호
- (일부개정) 2016-12-30 조례 제 4093호
- (일부개정) 2017-06-30 조례 제 4161호 (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)
- (일부개정) 2017-10-31 조례 제 4205호
- (일부개정) 2018-04-13 조례 제 4266호
- (일부개정) 2018-09-21 조례 제 4297호
- (일부개정) 2019-04-26 조례 제 4393호
- (일부개정) 2019-09-20 조례 제 4445호
- (일부개정) 2020-03-27 조례 제 4535호
- (일부개정) 2020-03-27 조례 제 4535호
- (일부개정) 2020-05-15 조례 제 4552호 (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)
- (일부개정) 2020-10-23 조례 제 4605호
- (일부개정) 2021-04-02 조례 제 4670호
- (일부개정) 2021-10-29 조례 제 4777호
- (일부개정) 2021-12-31 조례 제 479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
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- (일부개정) 2022-04-08 조례 제 4870호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, 소속기관,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,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. <개정 2015.12.31., 2018.9.21., 2021.12.31.>

제2조(보조·보좌기관 등의 직급) 강원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본청의 실장·국장·본부장·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,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 등) 도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의 실·부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의2(합의제행정기관) 강원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감사위원회,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[본조신설 2018.9.21.], <개정 2021.4.2.>

(중 략)

제 3 장 직속기관

(중 략)

제6절 강원도립대학교

제35조(설치)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을 설치 한다.<개정 2016.4.1., 2021.12.31.>

② 대학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.<개정 2016.4.1.>

제36조(총장)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,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.<개정 2016.4.1.>

제37조(운영조례 및 학칙)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16.4.1.>

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,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6.4.1.>

(이하생략)